

#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구 미 시

#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10.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 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하여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 나. 또한, 주민공청회 의견수렴과 관련 실과 협의 완료 후,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2. 제안내용

- 가. 위치 및 면적 : 구미시 행정구역 전역 615.55km<sup>2</sup>
- 나. 기준연도 / 목표연도 : 2020년 / 2040년
- 다. 주요내용
  - (1) 기초조사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자연환경, 인문환경, 경관현황, 공원녹지 현황 분석, 주민의식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공원녹지 수요분석, 종합분석
  - (2) 기본구상  
미래상 및 목표설정, 지표설정, 기본구상
  - (3) 기본계획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총괄
  - (4) 관리·이용·주민·참여계획  
관리계획, 이용·주민참여계획, 추진 및 투자계획

### 3. 추진경위

- 2020.05.20. :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20.09.~12. :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
- 2021.06.~08. : 설문조사(주민의식조사 및 공원이용행태조사 포함)
- 2021.09.~12. : 구미시 실무진 회의(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내용 협의)
- 2022.07.~08. : 구미시 관련부서 협업 회의
- 2024.03. : 2040년 구미시 도시기본계획 완료
- 2024.04.~12. :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 2025.01.~08. : 기본계획(안) 작성 및 세부내용 수정 및 검토
- 2025.09.11. :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구미시 공고 제2025-2603호)
- 2025.09.19.~09.30. : 관련부서 협의
- 2025.09.25. : 주민공청회 개최
- 2025.09.25.~10.10. : 주민의견 청취

### 4. 향후 추진계획

- 2025.10. :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5.11. : 승인 신청 (시→ 경상북도)
- 2025.11. : 경상북도 관련부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2025.12. :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6.01. :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경상북도)

### 5. 참고사항

가.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주요내용

나. 관계법령

#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 가. 계획의 개요

###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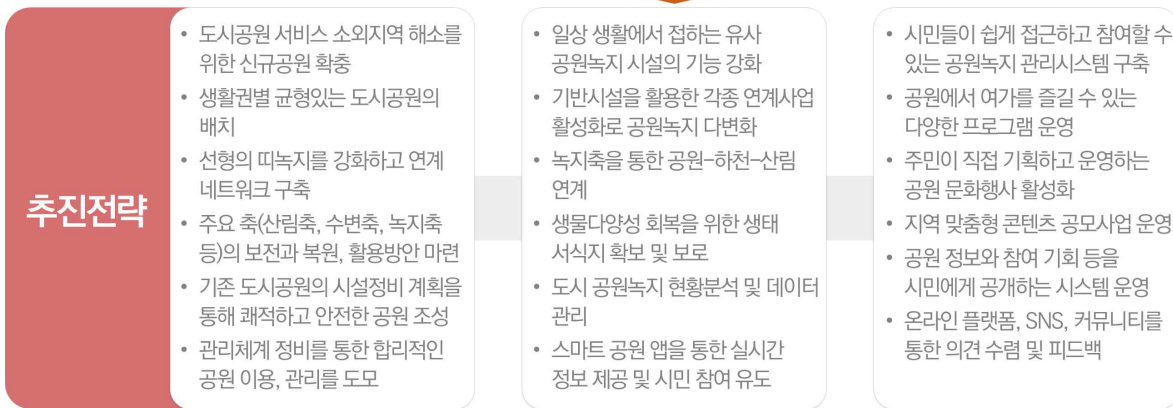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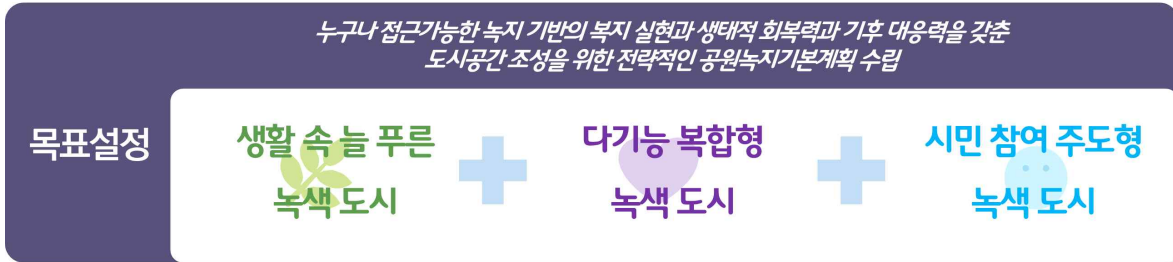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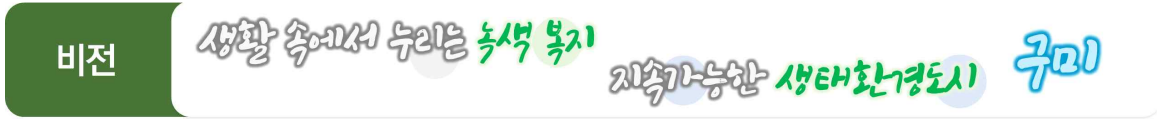
- 계획의 배경
  -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하여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
  - 구미시의 자연·인문·역사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 보전, 관리, 이용에 관한 장기적 계획 수립
- 계획의 목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응 및 기존 공원 활성화, 신규공원 확충 등 구미시 공원녹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를 도모

###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0년
  - 목표연도 : 2040년
- 공간적 범위
  - 구미시 행정구역 전역 : 615.55km<sup>2</sup>
- 내용적 범위
  - 기초조사
  - 기본구상
  - 공원녹지 기본계획
  - 관리·이용 및 주민참여계획

## 나. 기본구상

### ■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 미래상



- 구미시 대표명소와 시대적 흐름과 트렌드, 사회적 이슈에 따른 공원 녹지의 역할을 고려하여 ‘2040년 구미시 공원녹지 미래상’ 을 설정

## 다. 지표설정

구분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204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비고
	목표연도(2020년)	기준연도(2020년)	목표연도(2040년)	
인구수(명)	550,000	420,987	490,000	
공원결정면적(m <sup>2</sup> )	31,180,000.0	8,963,887.1	13,613,423.7	
1인당 공원면적(m <sup>2</sup> /인)	56.69	21.29	27.78	

## 라. 종합배치구상

### ■ 보전체계

- 생태기반이 되는 보전거점, 녹지축, 자연자원의 보전
- 핵심 산림자원의 활용방안 마련

### ■ 확충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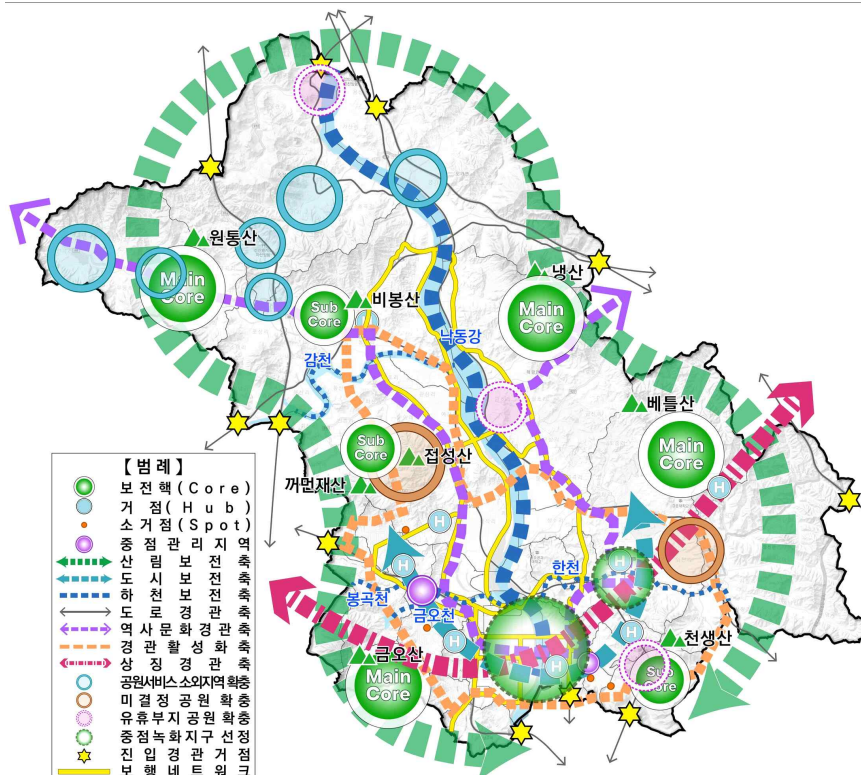
- 다양한 형태의 특색있는 공원녹지 확충
- 지역간 균형 있는 공원녹지 서비스 제공
- 녹화면적 및 유사공원 녹지 기능 확충

### ■ 이용체계

- 공원녹지의 유기적인 연결 체계를 확립하여 네트워크 구축
- 산림적인 정비 및 이용 방안 확대
- 시민 삶의 질 수준 향상

### ■ 경관체계

- 산림경관, 수변경관 등 경관 요소간의 연결성 강화
-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녹지체계 구성으로 도시경관 정체성 확보



## 마. 공원녹지현황

### ■ 공원현황 (2020년 기준)

구분	합계		조성		미조성		비고
	개소	면적(m <sup>2</sup> )	개소	면적(m <sup>2</sup> )	개소	면적(m <sup>2</sup> )	
합계	304	8,963,887.1	171	3,388,141.2	133	5,575,745.9	
생활권공원	285	8,492,471.1	168	3,082,384.2	117	5,410,076.9	
근린공원	56	8,059,305.5	32	2,809,646.3	24	5,249,659.2	
어린이 공원	181	353,223.5	128	263,643.8	53	85,759.7	
소공원	48	79,942.1	8	9,104.1	40	70,838.0	
주제공원	19	471,416.0	3	305,747.0	16	165,669.0	
수변공원	17	373,406.0	2	214,780.0	15	158,626.0	
체육공원	1	90,967.0	1	90,967.0	-	-	
문화공원	1	7,043.0	-	-	1	7,043.0	
인구수	420,987명						
1인당 공원면적	21.29m <sup>2</sup> /인						

### ■ 녹지현황 (2020년 기준)

구분	합계		조성		미조성		비고
	개소	면적(m <sup>2</sup> )	개소	면적(m <sup>2</sup> )	개소	면적(m <sup>2</sup> )	
합계	359	2,953,809.6	86	1,050,315.0	273	1,903,494.6	
완충녹지	186	1,291,069.3	64	703,256.0	122	587,813.3	
경관녹지	165	1,607,576.3	17	340,798.0	148	1,266,778.3	
연결녹지	8	55,164.0	5	6,261.0	3	48,903.0	

## 바. 공원기본계획

### ■ 미조성공원 정비

- 목표연도(2040년)까지의 구미시 실효 예정공원은 총 97개소임
- 그 중, 각종 개발사업지,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내 공원 83개소 제외
- 도시공원 일몰제로 부분 실효되어 파편화 되어 있는 지형으로 인해 조성이 불가능한 공원 14개소를 제외하면 미조성공원의 정비 가능한 공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기초성공원 정비

- 연차별 정비 : 지역 접근성, 조성시기,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정
- 유형별 정비 : 지역 여건 및 기 조성 시설을 고려한 테마 선정
  - 근린공원 : 생태 특화, 건강힐링 공간, 교육체험학습장, 계절별 테마존 등
  - 어린이공원/소공원 : 세대별 맞춤형공간, 커뮤니티 활동공간, 스마트요소 도입 등
- 정비대상은 근린공원 12개소, 어린이공원 62개소, 체육공원 1개소로 총 75개소이고, 면적은 1,172,742.9㎡임

### ■ 공원확충계획

- 생활권별 공원서비스 불균형을 고려하여 기정 계획 중 미결정 공원 확충,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확충, 유휴부지 이용한 공원확충계획을 수립함
- 총 12개소 공원확충계획을 수립하였고, 면적은 6,118,008.9㎡임

## 사. 녹지기본계획

### ■ 녹지정비계획

- 구미시의 결정된 시설녹지는 359개소이고, 그 중 조성된 시설녹지는 86개소, 미조성 시설녹지는 273개소임
- 미조성 시설녹지 273개소 중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녹지를 제외한 10개소를 대상으로 함

### ■ 녹지확충계획

- 완충녹지 2개소, 연결녹지 2개소, 면적 171,094.0㎡ 확충계획 수립

## ■ 가로수계획

- 현황 : 느티나무 외 24종 55,833주 식재됨
- 계획
  - 결주구간 보완식재 : 32개 노선, 연장 110.935km, 총 505주 식재  
(느티나무, 은행나무, 칠엽수, 히말라야시다, 왕벚나무, 목백합, 이팝나무, 목련)

## 아. 도시녹화계획

### ■ 중점녹화지구 선정 (3개소, A=4,023,000㎡)

- 내부 녹지망 정비, 건축물 옥상/벽면녹화, 중앙녹지대 조성
- 학교숲 조성, 공공기관 쉼터 조성

### ■ 공원화 사업

- 학교숲 조성 (51개소, 421,220㎡)
- 공공기관 쉼터 조성 (8개소, 4,000㎡)

## 자. 공원녹지기본계획 총괄

구분	기준연도(2020년)		목표연도(2040년)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인구(명)	420,987		490,000		증)69,013	
1인당 도시공원면적(㎡)	21.29		27.78		증)6.49	
1인당 공원녹지면적(㎡)	28.31		33.73		증)5.42	
합계	304	8,963,887.1	295	13,613,423.7	증)4,649,536.6	
도시 공원	생활권공원	285	8,492,471.1	272	13,043,675.7	증)4,551,204.6
	근린공원	56	8,059,305.5	57	12,640,390.2	증)4,581,084.7
	어린이공원	181	353,223.5	169	333,864.6	감)19,358.9
	소공원	48	79,942.1	46	69,420.9	감)10,521.2
	주제공원	19	471,416.0	23	569,748.0	증)98,332.0
	수변공원	17	373,406.0	19	394,703.0	증)21,297.0
	체육공원	1	90,967.0	1	90,967.0	-
	문화공원	1	7,043.0	3	84,078.0	증)77,035.0
합계	359	2,953,809.6	371	2,912,245.3	감)41,564.3	
시설 녹지	완충녹지	186	1,291,069.3	200	1,383,469.5	증)92,400.2
	경관녹지	165	1,607,576.3	153	1,364,638.6	감)242,937.7
	연결녹지	8	55,164.0	18	164,137.2	증)108,973.2

## 관계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이하 "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 도시공원위원회에의 자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조언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소 관 부 서		공원녹지과
입 안 자	과 장	이 상 우
	팀 장	박 효 섭
	담 당 자	이 재 현 (480-5562)